

#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지침

2008년 3월 20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「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」이 5월 29일 관련 대책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발표됨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「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지침」을 마련, 각 시·도와 농협에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가에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.



## ⊗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의 목적

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도모

## ⊗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의 사업개요

- 사업주관: 농협(중앙회 시·군지부 및 조합)
  - 사육확인 등 증빙 관련: 시·군 지자체 협조
  - 기존 1조원은 기존 지침에 따라 시·군에서 사업 주관
- 사업부서: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·축산정책팀, 농협중앙회(농업금융부, 축발기금사무국, 축산건설팀부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 협조
- 지원대상
  -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
    - ※가축계열화 농가 및 시 경영자금 지원받은 농가 제외
    - ※기존 사료구매자금(1조원)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·통보된 농가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후순위
  - 기타가축 사육농가(추가 지원액에만 해당)

※배합사료를 구매하여 가축에 급여하는 농가

- 지원내용: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
- 사업기간: 2008. 3. 19 ~ 2008. 12. 31
  - 추가지원액에 대한 사업기간: 2008. 7. 1 ~ 2008. 7. 31
  - ※농가 신청기간은 농협에서 결정·운영
- 지원규모: 15,000억원(추가지원액 5,000억원)
  - 이차보전재원: 축산발전기금
  - 소요예산: 2008년 26,048백만원, 2009년 이후 109,853백만원
- 지원방법: 농협자금 지원 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
- 지원조건
  - 금리: 변경전 3.0% → 변경후 1.0% (정부 및 농협에서 각 1.0% 부담)
  - 대출기간: 변경전 1년 일시상환 → 변경후, 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, 돼지·닭·기타가축 2년 분할상환

※농가 특별 사료구매 융자금을 기 지원받은 축산농가는  
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대출취급기관 신청한 후 지원  
조건 변경
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(중앙회 시·군지부 및 조합)
- 농가당 지원한도 : 한육우·낙농 100백만원, 양돈 200, 양계·오리 50, 기타가축 30
- 축종별 지원단가
  - 한육우·낙농 : 1,200천원/두
  - 양돈 : 100천원/두
  - 양계·오리 : 650원/수
  - 기타가축 : 추가지원액에만 적용(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 제출)
- ※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이상인 가축: 1년치(사슴, 말 등)
- ※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미만인 가축: 6개월치(산양, 토끼, 메추리, 타조 등)
-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액 배정(축종별)  
【표1. 참조】

☞ 사업추진체계 (추가 지원액 50,000억원에만 적용)

1 사업신청

-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선정
- ※시·군·구청으로부터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두수, 기존 사료구매 자금 지원결정·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
- ※기타가축의 경우 객관적인 신뢰가 가능한 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, 사료구매실적 확인서, 현금영수증)를 첨부토록 함.

2 사업자 선정 및 집행

- 대출취급기관은 사육마리수 및 사료구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축종별 배정한도 내에서 용자 실행
-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

3 사육확인 등 증빙 관련(시·군·구청)

-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의 축산업 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두 수, 기존사료구매자금 신청여부 등을 기재한 후 교부(수정 및 위조방지 조치)

4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

-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에 용자를 실행하고 농식품부에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교부
- 농협중앙회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조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



【표 1】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액 배정(축종별)

(단위 : 억원)

축종	한육우	젖소	양돈	양계	오리	기타가축	계
배정액	1,150	500	1,500	1,150	100	600	5,000